

動力資源部告示

(제84—5호)

石油事業法 제18조의 2, 同法시행령 제22조 및 同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品質檢査 및 검사수수료의 징수시기·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4. 2. 29
動力資源部長官

1. 검사방법

가. 검사의 구분 및 시행방법

- (1)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2) 윤활유는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 (3) 자동차용 휘발유, 灯油 및 輕油는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사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포장용기에 검사필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검사필증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지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 (5) 검사는 韓國石油品質檢査所(이하 “검사소”라 한다)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검사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시료채취방법

- (1) 주유기가 부착되어 있는 석유판매업소의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및 경유에 대하여는 주유기의 주입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2) 윤활유는 생산로트별로 시료를 채취. 다만, 생산로트별로 시료를 채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가) 시료채취후 로트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봉인지등을 사용하여 로트를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나) 시료의 채취량은 4L 이하로 한다.
- (다) 사전검사시 1회 검사로트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 포장용량 | 구분 | 로 트 의 크 기 | |
|------|------|-----------|-------------|
| | | 최소(개) | 최 대 |
| 캔 | 0.2L | 3,000 | 동일로트에서생산된전량 |
| | 0.5L | 3,000 | “ |
| | 1L | 3,000 | “ |
| | 2L | 2,000 | “ |
| | 4L | 1,000 | “ |
| 드 럽 | 20L | 500 | “ |
| | 200L | 30 | “ |

비고: 1. 0.2L 이하의 제품에 있어서 검사로트의 대상은 가정용 기계유 제품에 한한다.

2. 최소로트의 크기는 검사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및 수입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시험방법

한국공업규격에 시험방법이 제정되어 있지 아닌 항목에 대하여는 IP(英國석유협회), ASTM(美國재료시험협회), JIS(日本공업규격)의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라. 불합격 판정

석유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의 석유제품 품질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마. 이의 시험 및 이의 검사(이하 "이의시험"이라 한다)

- (1)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고 불합격 내용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통보후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 (2) 이의시험은 동일시료에 대하여 이의된 부분에 한한다.
- (3) 이의시험은 동일검사원이 행할 수 없다.

2. 검사수수료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가. 검사 또는 의뢰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 또는 의뢰시험 신청시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수료의 감면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석유제품(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한한다)의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검사소 소장이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動力資源部公告

(제84-3호)

石油事業法 제18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이 同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탁되었음을 공고한다.

1984. 2. 29
動力資源部長官

- 1.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가. 대표자: 이사장 강용식(소장: 박정오)
 -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1016-21 21번지
- 2. 검사품목(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석유제품에 한함)

- 가. 윤활유: (1) 내연기관용 윤활유
 - (가) 육상내연기관용 윤활유
 - (나) 선박내연기관용 윤활유
 - (다) 디젤기관차용 윤활유
 - (라) 2사이클가솔린기관용 윤활유

- (2) 기계유
- (3) 기어유
- (4) 냉동기유
- (5) 터어빈유
- (6) 축수유
- (7) 압축기유

- 나. 연료유: (1) 자동차용 휘발유
- (2) 등 유
- (3) 경 유

3. 시행일: 1984년 3월 1일